

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(2026.02.12. 제정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①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“) 규약 제 26조부터 제28조의2에 따라 연합회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각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는 규약과 이 규정에 따르며,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 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제2장 위원회의 설치

제3조(위원회의 종류) ① 연합회는 목적사업 수행 및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

1. 대회 및 동호위원회
2. 대외협력위원회
3. 규정 개정 및 복지위원회
4. 스포츠마케팅 및 교육위원회
5. 스포츠공정위원회
6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한 위원회

제4조(설치 근거) ① 위원회의 설치는 규약에 근거하며, 신설 또는 폐지 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3장 조직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,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.

제6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잔임 기간 보선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사무처 직원이 담당한다.

제4장 운영

제9조(회의 소집) ①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의결정족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②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1조(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자신 또는 친족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②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.

③ 당사자는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12조(비밀유지)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회의록 작성) ①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서명·날인한 후 사무처에 보관한다.

제5장 권한과 기능

제14조(공통 기능) ①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
2. 회장 또는 이사회에 위임 사항 처리
3. 소관 사안에 대한 개선 건의

제15조(특별 기능) ① 각 위원회의 특별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대회 및 동호위원회: 연합회 주최 대회 및 동호회 운영 관련 업무
2. 대외협력위원회: 대외 교류, 협력사업, 홍보 관련 업무
3. 규정 개정 및 복지위원회: 규정 정비 및 회원 복지 관련 업무

4. 스포츠마케팅 및 교육위원회: 후원유치, 교육 및 연수 기획 업무
5. 스포츠공정위원회: 규정관리, 포상 관련 업무

제6장 보칙

제16조(경비)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연합회 예산으로 충당한다.

제17조(문서 관리) ① 위원회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는 사무처에 보관한다.

제18조(준용규정)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 및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- 2026년 02월 12일(제정 / 이사회)